

카드범죄

'카드'가 당신의 인생까지.....



☞ 이용하기 전에

필요하지 않은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.
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

○설령 애인이라도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는다.

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피한다.

○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번호는 피한다.

카드는 현금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따로 갖고 다닌다.

수상한 가게에서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.

○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이용한다.

○인터넷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이용한다.

※ 15쪽의 '인터넷사기 등'도 참고하십시오.



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○지불을 위해 카드를 맡겼을 때는 카드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는다.

○점원이 카드를 점포 안으로 가지고 갔을 때는 특히 주의하며,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처리하도록 점원에게 말한다.

○계산대에서 건네받은 고객용 매출전표는 소중히 보관하며, 나중에 카드회사가 발송한 카드 이용명세와 고객용 매출전표의 내용을 반드시 바로 대조한다(조금이라도 빨리 스키밍 등의 피해를 알 수 있다).

※ 스키밍.....카드를 위조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기(磁器)정보를 훔쳐내는 것.



만약 피해를 당했다면.....

○카드 도난 피해나 스키밍 피해를 알았을 때는 신속히 카드회사에 연락한다.

○경찰에도 신고한다.



피해 후의 대응

○보상 등에 관하여 카드회사에 상의한다.

☞ 도난(위조)카드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하여

현금카드를 도난당한 후 현금자동지급기(ATM)에서 예금이 인출된 경우[예금자보호법]

○도난당한 날이나 예금이 최초로 인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함(부득이한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되지만, 보상청구는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).

보상액은 '과실'이 있으면 감액되며, '과실'이 큰 경우는 보상받지 못한다(위조카드에 의한 경우는 전액보상, 보상 청구기간 없음).

도난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

○신용카드를 발행한 회사의 규약에 따라 보장기간(카드회사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서를 송부한 후 60일 이내에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, 피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서를 수취한 지 2주일 이내에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)이 다르며, 또한 '과실'이 있으면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해 둔다(위조 시에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).

만남사이트 이용하지 않는다!!



☞ 주의할 점

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

- 이성교제의 자리를 제공하는 만남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답글을 다는 등의 이용을 일체 하지 않는다.
- 만남사이트 업자가 보낸 듯한 광고메일에 회신을 하지 않는다. 이메일 주소는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문자와 숫자를 나열하는 등 복잡하게 만들어 스팸메일이 오지 않도록 한다.

보호자의 경우

- 만남사이트 이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집의 컴퓨터에 필터링 기능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에는 접속제한 조치를 하여, 자녀가 만남사이트를 접할 기회를 차단한다.
- 만남사이트 이용의 위험성과 부정한 글을 올리는 것 * 이 범죄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, 만남사이트를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친다.
*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만남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금전 등을 매개로 성적관계를 원한다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습니다.

일반인의 경우

- 만남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.
- 스팸메일에 회신하지 않는다.
- 부주의하게 직접 만나지 않는다.



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- 이용하지 않는다, 부주의하게 상대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.

만났다면

- 아무 생각없이 차에 타거나 통행이 적은 장소에는 따라가지 않는다.
- 수상한 점이나 위험을 느끼면 즉시 상대방에게서 떨어져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방범경보기를 활용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.



만약 피해를 당했다면.....

- 신속히 경찰에 상의한다.
-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이 와도 대응하지 않는다. 메일주소를 변경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한다.
-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상의한다.



가정 폭력(DV)

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상의를!!



- 가정폭력방지법에 입각한 보호명령(접근금지명령, 퇴거명령)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는다.
- 조정예 의한 대화를 추진하고 해결책을 검토한다.
- 피해를 입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, 주변에서 가정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기관을 알려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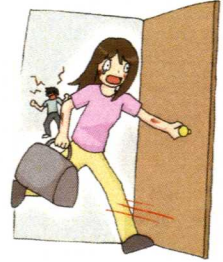


만약 피해를 당했다면.....

- 배우자간의 폭력도 당연히 위법행위이다.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상의한다.
- 언제든지 피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보하고 필요한 소지품을 정리해둔다.

신변의 위험을 느끼면

-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경찰 110 번에 신고하든지,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한다.
- 피할 곳이 없을 때는 일시보호시설(공적시설, 민간시설)로 피난한다.



피해 후의 대응

-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에 전화나 면접상담을 한다.
- 폭력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얘기한다.

아동학대

알게 되면 즉시 연락을!!



☞ 학대의 특징

- 신체에 외상이 생기거나, 생길 위험이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(신체적 학대).
-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양육을 거부하고,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를 방치하는 것(방임).
- 심한 폭언 및 부정적 태도를 취하거나, 또한 가정폭력을 가하는 것(심리적 학대).
- 외설적인 행위를 하거나 시키는 것(성적 학대).

☞ '학대' 라고 느꼈다면

- '학대' 라고 느끼면 시초(市町), 지구의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, 어린이가정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(연락한 분의 비밀은 보장됩니다).

☞ 조기발견 포인트의 예시

- 어린이에게 의심스러운 외상이나 행동이 있거나, 어린이가 영양실조 상태이다.
- 어린이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거나 몹시 불결하다.
-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.
- 보호자가 육아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등 양육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.
- 이웃에서 어린이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일상적으로 듣는다.



음성사채에 주의

범죄자는 남의 약점에 파고 듭니다!!



☞ 주의할 점

돈을 빌리기 전에 지금 정말 필요한 돈인지 잘 생각한다.
다음과 같은 대부업자에게는 빌리지 않는다.

- '바로 대출, 다중채무 및 신용불량자 OK, 심사 없음, 빚을 하나로' 등 저금리에 좋은 조건만 열거하며, 등록번호와 상환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선전한다.
-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명만 게재하고 권유한다.
- 대출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한다.
- 가족, 친척, 지인, 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한다.

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한다.
대부업 등록을 한 업자인지 확인한다.

- '○○현지사(○) 제○○○○호, ○○재무국장(○) 제○○○○호' 라는 등록번호가 있다.
- 기재되어 있어도 거짓인 경우가 있으므로, 금융청이나 시가현 홈페이지에서 대부업 등록업자인지를 확인한다.

○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.

이상하다고 느끼면 돈을 빌리기 전에 공적인 상담창구를 통하여 상의한다.
대출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수 없을 때는 거절한다(금리와 이자를 반드시 확인한다).
자유계약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받는다.

○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출 받지 않는다.

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.....

○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상한금리[※]를 초과하는 위법적인 금리 등을 청구할 때는 용기를 내어 의연한 태도로 거절한다.

※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상한금리	10만엔 미만	연20%
	10만엔 이상~100만엔 미만	연18%
	100만엔 이상	연15%

○ 위협적인 징수를 당했을 때 등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상의한다.

○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기에 공적 상담창구 등에 상의한다.

폭력단에는

'겁내지 않는다' '돈을 주지 않는다' '이용하지 않는다'



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- 지역, 직장에서 폭력단 배제활동을 추진한다.
- 폭력단 추방! 3 NO 운동을 전개한다(폭력단을 '겁내지 않는다', 폭력단에 '돈을 주지 않는다', 폭력단을 '이용하지 않는다').



만약 피해를 당했다면.....

- 의연한 태도로 대응한다(겁내지 말고, 깔보지 말고, 용기를 갖고).
- 냉정하게 대응한다(도발에 응하지 않는다. 도발하지 않는다).
- 신념과 기백을 갖고 폭력에 굴하지 않는다.
- 법률과 사회의 상식에 따른 해결책을 취한다.
- 이유없는 요구, 협박에는 응하지 않는다.
- 근거없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안이하게 날인하지 않는다.



피해 후의 대응

- 폭력단에 협박받는 등 불법행위를 당하거나, 목격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.